

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3. 9. 17.(화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경재 위 원 장
김충식 부위원장
홍성규 상임위원
김대희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○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 제1호에 의거, 제 2010-1차 회의(2010.1.14.) 및 제2012-48차 회의(2012.8.31)에서 의결한 ‘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’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방송심의 제재조치(출연자 조치) 관련 방송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(2013-35-136)

-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의한 제재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, ‘출연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’ 를 취하지 아니한 (주)채널에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‘과태료’ 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방송사명	프로그램명 (방송일)	출연자	위반 내용	처분내용
(주)채널에이	박종진의 ‘쾌도난마’ (2012.11.6)	윤창중	방송심의 제재조치 관련 출연자 조치 미 이행	과태료 500만원
	이언경의 ‘대선만사’ (2012.11.21)	윤창중		과태료 500만원
	박종진의 ‘쾌도난마’ (2012.12.11)	윤창중		과태료 500만원

3] 보고사항

가. 「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「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(위원회 고시)의 재검토기한이 2013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하는 「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
- 상위법률인 방송법 중 시청점유율 관련 규정(제69조의2)의 개정이 없었고, 방송신문의 영향력 측정을 위해 지속적인 시청점유율 조사가 필요하므로 현행 고시를 유지하며, 재검토기한을 2016년 9월 30일로 연장함